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제정(안)

2024. 2.

국립국제교육원

## 1. 제정 개요

가. 규정명(안)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sup>1)</sup>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을 통합

나. 제정사유 : 기존의 3개 지침의 내용이 대동 소이함에도,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장학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 필요하다.

다. 주요내용 : 3개 지침의 유사한 내용은 통일하되, 장학생의 학사 관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변경

## 2. 주요 내용 (※ 통합되는 기존 지침의 내용에서 변경되는 주요사항)

가. (휴학 승인 사유 상세화) 한국어연수과정의 ‘휴학’ 사유를 기존의 ‘부득이한 경우’ 에서 ‘본국의 긴급 소환, 직계 가족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으로 상세화(안 제12조)

나. (학생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 장학생의 체류지,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수학기관에 즉시 신고 의무 신설(안 제14조)

다. (일시출국 가능 사유 확대) 학기중 일시출국 가능 사유를 기존의 ‘학위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완화(안 제15조)

라. (징계 사유 완화) 징계의 종류에서 ‘경고’ 를 제외하고, 무단 일시출국 등으로 인한 ‘경고’ 의 경우 위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은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에 관한 양해각서(‘17.11.22.)’ 등에 따라 석박사, 학부(1년), 단기(2주~5주)간 진행되는 한일 학생 교류 사업으로 석박사 학위과정만 등 학사지침 통합

- 마. (자격상실 요건 강화) 장학생 자격상실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의 ‘성범죄는 벌금 이상, 그 외 범죄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 그 외에 범죄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20조, 제22조)
- 바. (형사사건 기소 학생 관리 강화)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수학기관에 신고의무 및 수학기관의 교육원에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형의 확정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조항 신설(안 제21조)
- 사. (취업 허용범위 확대) 수학대학이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졸업 예정 장학생의 취업 허용(안 제24조)

붙임 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제정(안) 1부.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제정(안)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제정(안)

제정 2024. ○. ○ 예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관(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장)
2. 수학대학(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장학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교류지원 사업
2.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석박사 학위과정)

**제4조(장학 기간)** ①장학 기간은 한국어 연수 기간 외에 다음 각호에 따라 학과의 수업 연한 기간 이내로 한다.

1. 전문학사과정 : 2-3년
2. 학사과정 : 4-6년
3. 석사과정 : 2년
4. 박사과정 : 3년
5. 석·박사 통합과정 4년

②제1항의 장학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장학 기간에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한국어연수과정)** ①장학생은 입학 전에 1년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이라 한다)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가 면제되며,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을 받은 경우, 수학대학장이 승인하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면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개설하여 외국어로 학위과정의 이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를 예외로 한다.

④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이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TOPIK 등급 요건을 완화하여 진학할 수 있다.

⑤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한국어 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이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연장한 장학생은 교육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지급 세부 지침(이하 ‘장학금 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어 연수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장학생이 한국어연수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학위과정 입학)** ①장학생은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학위과정 입학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학대학 변경)** 장학생은 교육원장으로부터 입학 대학을 승인받은 이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학과 등 변경)** ①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장학생은 승인받은 최종입학학과(부)가 폐과되거나 또는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재설계 등의 사유로 학과(부) 변경을 원할 경우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R&D 과정 등 특수한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에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학과(부)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②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학과(계열) 변경 처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어연수과정 중인 장학생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위과정으로 진학한 후에 학과(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9조(등록)** ①장학생은 수학기관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매학기 등록 기한까지 등록을 아니한 경우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학 의무)** 장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학 상황 보고)** ①수학기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한국어연수과정 : 성적 및 수료 상황
2. 학위과정 : 성적, 수료 및 학위 취득 상황

②학위과정 장학생은 최종 수학 완료 시 수학종료보고서 등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휴학 등)** ①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다만 본국의 긴급 소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어 연수기관의 규정에 따라 휴학 등을 신청하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위과정 장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고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은 본국의 긴급 소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며 휴학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학대학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④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복학)** ①복학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매학기 개시일 2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연락망 유지)** 장학생은 체류지,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즉시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수학대학의 장학생 및 교육원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일시출국)** ①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의 일시출국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 연수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에는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는 본국의 긴급 소환, 직계 가족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2. 한국어 연수기관장이 정한 방학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②학위과정 장학생의 일시출국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에는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2. 수학대학장이 정한 방학 기간 내에서 일시출국 허용

**제16조(재입국 신고)** ①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매학기 방학 전 일시출국신청서를 수합하여 승인 처리하고, 방학 종료 후 출입국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단출국 및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등 학사지침 위반자에 대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귀국 신고)** ①장학 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장학생은 소속 수학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장학 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위과정 장학생이 장학 기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할 경우, 전문학사·학사·석사 학위과정은 12개월까지, 박사 학위과정은 24개월까지 귀국 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장은 장학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장학생의 귀국 연기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경고 조치한다.

1. 한국어연수 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
2. 학기 단위 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전문학사·학사과정 70점/100점, 석·박사 과정 80점/100점)
3.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다만, 위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제24조제2항 수학대학장이 인정한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이외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자격상실 처분한다.

1. 수학대학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5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5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적용되는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3. 수학대학이 정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4. 수학대학이 정한 학기 시작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
5. 휴학 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휴학 기간을 초과한 경우
7.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의 목적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 다만, 수학대학의 교육과정 계획에 근거하여 방학 기간 내에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교류 과정은 예외로 한다.
8. 제15조 각호의 기준에 따른 일시출국 최대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다만, 교육원장이 그 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금 일시정지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한다.
9. 제18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외 범죄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11. 사망, 정신적·신체적 무능력, 연락두절, 체류기간 종료, 출국 명령 등으로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장학을 중도 포기한 경우
13. 이 외에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20조(징계)** ①징계는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장학금 일시정지, 자격상실 처분을 말한다.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치활동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익을 실추시킨 경우
2. 절도, 폭력,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포함), 폭언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각종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이 외에 장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③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징계 처분을 하기에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등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제21조(형사사건 기소 사실 신고 등)** ①장학생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된 경우, 수사 개시 사실 또는 형사사건 기소 사실을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형사사건 기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장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④교육원장은 장학생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장학생에게 제19조제10호에 따라 자격상실 처분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교육원장은 장학생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 환수 대상 기간, 항목, 금액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장학금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침에 따른다.

②교육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학생의 월 중 국내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여 학업장려금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국내체류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위과정 장학생은 장학금 지침 제22조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기당 일시출국 일수 30일을 국내에 체류한 날로 간주한다.

④제12조의 휴학 기간에는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학업장려금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⑤제19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장학 기간 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 장학 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⑦학위과정 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한국어연수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과정 입학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의 소속 수학기관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24조(장학생 관리·점검)** 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있는 유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장학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간제취업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2.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3. 학위과정 장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 중에도 허용할 수 있다.

가. 수학대학 내 근로장학생의 경우

나. 수학대학에서 주관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학술 활동의 경우

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라. 장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연계한 인턴 활동의 경우

③학위과정 장학생은 수학대학이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취업일 이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5조(장학생 관리실적 평가)** 교육원장은 수학기관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인원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4. 3. 1. 부터 시행하며, 장학 기간 중인 장학생 전체에 적용한다.

(관련 지침의 폐지) 본 지침의 제정에 따라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은 폐지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장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 수정
제1조의1(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관(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장) 2. 수학대학(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제1조의1(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관(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장) 2. 수학대학(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제1조의1(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관(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또는 예비교육기관(장)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관(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장) 2. 수학대학(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 학부, 대학원의 지침상 용어로 통일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립국립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장학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교류지원 사업 2.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석박사 학위과정)	- 학사 운영 지침 통합에 따라 지침 적용 대상 명시
제15조(장학기간)	제12조(장학기간)	제15조(장학기간)	제4조(장학 기간) ①장학 기간은 한국어 연수 기간 외에 다음 각호에 따라 학과의 수업 연한 기간 이내로 한다. 1. 전문학사과정 : 2-3년 2. 학사과정 : 4-6년 3. 석사과정 : 2년 4. 박사과정 : 3년 5. 석·박사 통합과정 4년 ②제1항의 장학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장학 기간에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본 지침 적용 대상 과정들의 장학 기간을 통합하여 명시 * 장학 기간은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기준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제2조(한국어연수과정) ① 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1년의 한국어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이하 'TOPIK'이라 한다)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가 면제되며,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p> <p>②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이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장학생에게 제1항의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를 면제하거나 TOPIK 등급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③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을 받고 이상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장학금 지</p>	<p>제2조(한국어연수과정) ① 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1년의 한국어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이하 'TOPIK'이라 한다)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가 면제되며,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장학금 지</p>	<p>제2조(예비교육과정) ① 장학생은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 전에 1년의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이하 'TOPIK'이라 한다)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은 예비교육과정 이수 의무가 면제되며,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70%(84점) 이상을 받고 예비교육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예비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장학금 지</p>	<p>제5조(한국어연수과정) ① 장학생은 입학 전에 1년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이하 'TOPIK'이라 한다)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가 면제되며,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p> <p>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을 받은 경우, 수학대학장이 승인하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면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p> <p>③교육원장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개설하여 외국어로 학위과정의 이수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를 예외로 한다.</p> <p>④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이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TOPIK 등급 요건을 완화하여 진학할 수 있다.</p> <p>⑤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한국어 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이어야 한다.</p> <p>⑥제5항에 따라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연장한 장학생은 교육원</p>	<p>- 2024년도 신규 과정인 '글로벌 네트워크과정'은 석사과정(2년 이내)만 운영하여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를 지침에 반영</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급 세부 지침에 따른 어학 연수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p> <p>⑤장학생이 한국어연수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⑥교육원장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급 세부 지침에 따른 어학 연수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p> <p>④장학생이 한국어연수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⑤교육원장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급 세부 지침에 따른 예비교육과정 수업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p> <p>④장학생이 예비교육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예비교육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지급 세부 지침(이하 '장학금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어 연수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p> <p>⑦장학생이 한국어연수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 제11조(수학상황 보고) 제②항과 중복되어 삭제</p>
<p>제3조(학위과정 입학지원) ①장학생은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여야 한다.</p> <p>②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지원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조(학위과정 수학) ①장학생은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입학 지원) ①장학생은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여야 한다.</p> <p>②장학생은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지원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학위과정 입학) ①장학생은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학위과정 입학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조항 제목 정비</p> <p>- 학위과정 진학 과정 입학 결과는 한국어 연수기관 및 수학대학에서 교육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어 이를 지침에 반영</p>
<p>③장학생은 교육원장으로 부터 최종입학대학을 승인받은 이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p>	<p>④장학생은 교육원장으로 부터 최종입학대학을 승인받은 이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p>	<p>③장학생은 교육원장으로 부터 최종입학대학을 승인받은 이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p>	<p>제7조(수학대학 변경) 장학생은 교육원장으로 부터 입학 대학을 승인받은 이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p>	<p>- 조항 제목 정비</p> <p>- 규정의 적용 대상이 학위과정 장학생임을 명시</p>
<p>④장학생은 승인받은 최종입학학과의 폐과 또는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개설계 등의 사유로 학과 변경을 원할 경우 수학대학의 학칙에 의거 학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학과 변경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장학생은 승인받은 최종입학학과의 폐과 또는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개설계 등의 사유로 학과 변경을 원할 경우 수학대학의 학칙에 의거 학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학과 변경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장학생은 최종입학학과를 승인받은 이후 학과를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받은 학과의 폐과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육원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p>제8조(학과 등 변경) ①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장학생은 승인받은 최종입학학과(부)가 폐과되거나 또는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개설계 등의 사유로 학과(부) 변경을 원할 경우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R&amp;D 과정 등 특수한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에 선</p>	<p>- 조항 제목 정비</p> <p>- 대학의 실제 학사 운영을 반영하여 '학과'를 '학과(부)'로 변경</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u>발된 장학생은 해당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학과(부)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u></p> <p>②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학과(부) 변경 처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한국어연수과정 중인 장학생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위과정으로 진학 시 학과(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p>	- 장학생의 학과(부) 변경은 학위과정 진학 후에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
<p>제4조(학위과정 등록) 장학생은 수학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장학생은 수학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조(과정 등록) 장학생은 수학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9조(등록) ①장학생은 수학기관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매학기 등록 기한까지 등록을 아니한 경우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미입국, 연락두절 등 미등록 장학생에 대한 수학대학의 보고 기간 명시
<p>제5조(학위과정 수강) 장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p>	<p>③장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p>	<p>제5조(과정 수강) 장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학 의무) 장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p>	- 조항 제목 정비
<p>제6조(수학상황 보고) ① 수학기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 : 성적 및 수료 상황 2. 학위과정 장학생 : 성적 및 학위취득, 수료 상황</p> <p>②장학생은 최종 수학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수학종료보고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p> <p>③교육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수학기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 : 성적 및 수료 상황 2. 학위과정 장학생 : 성적 및 학위취득, 수료 상황</p> <p>⑥장학생은 최종 수학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수학종료보고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p> <p>⑧교육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수학상황 보고) ①수학기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예비교육과정 장학생 : 성적 및 수료 상황 2.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 성적 및 학위취득, 수료 상황</p> <p>②장학생은 최종 수학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수학종료보고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p> <p>(신설)</p>	<p>제11조(수학 상황 보고) ① 수학기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한국어연수과정 : 성적 및 수료 상황 2. 학위과정 : 성적, 수료 및 학위 취득 상황</p> <p>②학위과정 장학생은 최종 수학 완료 시 수학종료보고서 등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장학생 수학종료 보고 시, 졸업 및 수료에 따른 대학 내 행정절차가 완료 되어 지도교수의견서 제출 불필요</p> <p>- 제22조(장학금) 제2항으로 조문 위치 변경</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제7조(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은 연락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락처 변경신고서를 갖추어 수학기관을 경유하여 교육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은 연락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락처 변경신고서를 갖추어 수학기관을 경유하여 교육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은 연락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락처 변경신고서를 갖추어 수학기관을 경유하여 교육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비상연락망 유지)으로 조문 위치 변경
<p>제8조(휴학 신청) ①한국어 연수과정 장학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학위과정 장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휴학을 신청하고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은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학신청서 1부</li> <li>2. 지도교수의견서 1부</li> <li>3. 진단서 사본 1부(질병 휴학의 경우에 한함)</li> </ol> <p>②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휴학 신청) ①한국어 연수과정 장학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학위과정 장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휴학을 신청하고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은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학신청서 1부</li> <li>2. 지도교수의견서 1부</li> <li>3. 진단서 사본 1부(질병 휴학의 경우에 한함)</li> </ol> <p>②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휴학 신청)</p> <p>①장학생은 중대한 질병, 가정 사정, 본국의 긴급 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면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 사본 1부(질병 휴학의 경우에 한함)</li> <li>2. 휴학신청서 1부</li> <li>3. 지도교수의견서 1부</li> </ol> <p>다만, 예비교육과정 중인 장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휴학 등) ①한국어 연수과정 장학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다만 본국의 긴급 소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어 연수기관의 규정에 따라 휴학 등을 신청하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학위과정 장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고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은 본국의 긴급 소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며 휴학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학대학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p> <p>④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한국어연수과정의 휴학 신청 사유 상세화</p> <p>- 휴학 사유 상세화</p> <p>- 수학대학의 자체 휴학 처리 과정에서 지도교수 의견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이 되므로 지도교수의 견서 제출 삭제</p>
제9조(휴학 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휴학 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긴급소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휴학 등) 제3항으로 조문 위치 변경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제10조(복학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복학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복학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복학) ①복학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b>매 학기 개시일 2주 전까지</b>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수학대학의 복학 처리 결과 보고 시기를 학기 기준(개시일 2주전)으로 조정</p>
			<p>제14조(비상연락망 유지) 장학생은 체류지,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즉시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수학대학의 장학생 및 교육원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p>	<p>- 장학생, 수학대학, 교육원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장학생 비상연락처 변경신고 의무 명시 * '수학대학은 변경된 연락처를 HURIK에 즉시 입력</p>
<p>제11조(일시출국 신청) ① 한국어연수 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1. 학기 중에는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2. 방학 기간 중에는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②학위과정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제7조(일시출국 신청) ① 한국어연수 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1. 학기 중에는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2. 방학 기간 중에는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②학위과정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제11조(일시출국 신청) ① 예비교육과정 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비교육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1. 학기 중 개인질병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p> <p>2. 방학 기간 중에는 소속 예비교육과정 기관의 방학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 이내</p> <p>②석·박사 학위과정 중 에 일시출국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제15조(일시출국) ①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의 일시출국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 연수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에는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1. 학기 중에는 본국의 긴급 소환, <b>직계 가족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b>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2. <b>한국어 연수기관장이 정한</b> 방학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②학위과정 장학생의 일시출국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에는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 한국어연수과정의 학기 중 일시출국 승인 사유와 기간을 상세하게 명시</p> <p>- 용어 정비</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1. 학기 중에는 학위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2. 방학 기간 중에는 수화대학이 정한 방학 기간 범위 이내 일시출국 허용</p>	<p>1. 학기 중에는 학위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p> <p>2. 방학 기간 중에는 수화대학이 정한 방학 기간 범위 이내 일시출국 허용</p>	<p>1. 학기 중 학위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개인 질병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주 이내</p> <p>2. 방학 기간 중에는 수화대학이 정한 방학 기간 범위 이내</p>	<p>1. 학기 중에는 <u>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u></p> <p>2. <u>수화대학장이 정한 방학 기간 내에서 일시출국 허용</u></p>	<p>- 학위과정 장학생의 학기 중 일시출국 승인 사유를 제한하였으나, 제한 사유 완화(대학의 동아리 활동, 학교 홍보 활동 참여 기회 보장하고, 수화대학의 안정적인 학사 지원)</p>
<p>제12조(재입국 신고) ① 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수화대학은 매학기 방학전 일시출국신청서를 수합하여 승인처리하고, 방학 종료 후 출입국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단출국 및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등 학사지침 위반자에 대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재입국 신고) ① 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수화대학은 매학기 방학전 일시출국신청서를 수합하여 승인처리하고, 방학 종료 후 출입국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단출국 및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등 학사지침 위반자에 대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재입국 신고) ① 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수화대학은 매학기 방학 전 일시출국신청서를 수합하여 승인처리하고, 방학 종료 후 출입국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단출국 및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등 학사지침 위반자에 대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재입국 신고) ① 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수학기관장은 매학기 방학 전 일시출국신청서를 수합하여 승인 처리하고, 방학 종료 후 출입국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단출국 및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등 학사지침 위반자에 대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용어 정비</p>
<p>제13조 (논문작성) ① 학위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되, 대학 및 전공분야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논문인쇄비 청구) 장학생은 귀국 신고 시에 교육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위논문의 인쇄비를 소정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위 논문 1부</li> <li>2. 논문제출 확인서 1부</li> <li>3. 학위 논문 인쇄비 신청서 1부</li> <li>4. 인쇄비 영수증 1부</li> </ol>	<p>(해당없음)</p>	<p>제13조 (논문작성) ① 학위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되, 대학 및 전공분야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논문인쇄비 청구) 장학생은 귀국 신고 시에 교육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위논문의 인쇄비를 소정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위 논문 1부</li> <li>2. 논문제출 확인서 1부</li> <li>3. 학위 논문 인쇄비 신청서 1부</li> <li>4. 인쇄비 영수증 1부</li> </ol>	<p>&lt;삭제&gt;</p>	<p>- 논문인쇄비가 생활비, 건강보험료, 정착 지원금과 함께 '학업 장려금'으로 통합됨('24년도 예산안)에 따라 논문인쇄비 청구 및 지급 절차 조항 불필요</p>
<p>제14조(귀국 신고) ① 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장학생</p>	<p>제9조(귀국 신고) ① 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장학생은</p>	<p>제14조(귀국 신고) ① 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장학생</p>	<p>제17조(귀국 신고) ① 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장학생</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은소속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학위과정자가 장학기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할 경우, 석사는 12개월까지, 박사는 24개월까지 귀국 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장은 장학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장학생의 귀국 신고 연기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소속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장학생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하려면 장학기간 종료 일로부터 12개월까지 귀국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p>	<p>은 소속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석·박사 학위과정자가 장학기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할 경우, 석사는 12개월까지, 박사는 24개월까지 귀국 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장은 장학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장학생의 귀국 신고 연기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은 소속 수학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학위과정 장학생이 장학기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할 경우, <u>전문학사·학사·석사 학위과정은 12개월까지, 박사 학위과정은 24개월까지</u> 귀국 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장은 장학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장학생의 귀국 연기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용어 수정 (학사 운영 지침 통합으로 대학원과 학부 과정의 귀국 연기 기간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명시)</p>
<p>제15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제2조에 의한 한국어연수 기간 외에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석사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장학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경고 처분한다.</p> <p>1. 한국어연수 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p> <p>2. 학기 단위로 학위과정의 <u>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80점/100점 미만인 경우</u></p> <p>3.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단 일시출국 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p>	<p>제10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제2조에 의한 한국어연수 기간 외에 학과의 수업 연한에 따라 학부과정은 4~6년, 전문학사 과정은 2~3년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장학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경고 처분한다.</p> <p>1. 한국어연수 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p> <p>2. 학기 단위로 학위과정의 <u>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u></p> <p>3.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단 일시출국 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시출</p>	<p>제15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제2조에 의한 예비교육과정 기간 외에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장학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경고 처분한다.</p> <p>1. <u>예비교육과정</u> 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p> <p>2. 1년 예비교육과정 후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p> <p>3. 학기 단위로 석·박사 학위과정의 <u>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80점/100점 미만인 경우</u></p> <p>4.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단 일시출국 시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출국허용기간을</p>	<p>제15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제2조에 의한 예비교육과정 기간 외에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장학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u>경고 조치한다.</u></p> <p>1. 한국어연수 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p> <p>&lt;삭제&gt;</p> <p>2. 학기 단위 <u>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전문학사·학사 과정 70점/100점, 석·박사 과정 80점/100점)</u></p> <p>3.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다만, <u>위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u></p>	<p>- 제4조(장학기간)으로 조문 위치 변경</p> <p>- 용어 정비 (경고 처분 → 경고 조치)</p> <p>-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 취소, 긴급한 가정사정, 재난 상황 등 허가 기간 내</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시출국 최대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 제8호에 해당한다.</p> <p>4.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5.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고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p>	<p>국 최대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제8호에 해당한다.</p> <p>4.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5.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고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p>	<p>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에 해당한다.</p> <p>5.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신설)</p>	<p>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4. 제24조제2항 수학과 학장이 인정한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p> <p>5. 이외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입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교육원장이 검토후 인정</p> <p>- 용어 정비 (경고 처분 → 경고 조치)</p>
<p>제17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자격상실 처분한다.</p> <p>1. 교육원의 시정명령 등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2. 수학과학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p> <p>3. 제2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2조제2항에 의해 의무를 면제받거나 취득 요건 완화를 허가 받은 사람, 한국어연수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수학과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2조제3항 한국어연수과정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2조제3항 한국어 추가연수자로 추가 연수</p>	<p>제12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자격상실 처분한다.</p> <p>1. 교육원의 시정명령 등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2. 수학과학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p> <p>3. 제2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2조제2항에 의해 의무를 면제받거나 취득 요건 완화를 허가 받은 사람, 한국어연수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수학과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2조제3항 한국어연수과정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2조제3항 한국어 추가연수자로 추가 연수</p>	<p>제17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p> <p>1. 지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p> <p>2. 수학과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 활동을 한 경우</p> <p>3.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4. 교육원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5.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p> <p>6. 제2조 예비교육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예비교육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격점의 70%(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수학과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2조의 ② 예비교육과정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2조의 ② 예비교육과정 추가 교육 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p>	<p>제19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자격상실 처분한다.</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2. 제5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5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적용되는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p>	<p>- 용어 정비</p> <p>- 제13호로 통합</p> <p>- 제21조(징계)의 사유로 변경</p> <p>- 제21조(징계)의 사유로 변경</p> <p>- 반복 문구를 삭제하고 인용조문으로 표시</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p> <p>4.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p> <p>5.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6. 제16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p> <p>7. 중도 포기한 경우</p> <p>(신설)</p> <p>8.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 다만, 교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p>	<p>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p> <p>4.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p> <p>5.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6. 제16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p> <p>7. 중도 포기한 경우</p> <p>(신설)</p> <p>8.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 다만, 교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p>	<p>7.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신청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p> <p>8.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p> <p>9.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10. 제16조의 1, 3, 4, 5호에 의거, 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p> <p>11. 중도 포기한 경우</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12. 예비교육과정 학생이 제11조 1항 1, 2호를 위반한 경우</p> <p>13.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이 제11조 2항의 출국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p>	<p>&lt;삭제&gt;</p> <p>3. <u>수학대학이 정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u></p> <p>4. 수학대학이 정한 학기 시작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p> <p>5. 휴학 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6.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휴학 기간을 초과한 경우</p> <p>7.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의 목적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 다만, <u>수학대학의 교육과정 계획에 근거하여 방학 기간 내에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교류 과정은 예외로 한다.</u></p> <p>8. 제15조 각호의 기준에 따른 일시출국 최대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다만, <u>교육원장이 그 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금 일시정지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한다.</u></p>	<p>- 제20조(자격상실) 제7호 조문 위치 변경</p> <p>- 제20조(자격상실) 제5호 조문 위치 변경</p> <p>- 제20조(자격상실) 제9호 조문 위치 변경</p> <p>- 제20조(자격상실) 제13호 조문 위치 변경</p> <p>- 수학대학에서 미등록한 경우 자격상실 처분 신설</p> <p>-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학 기간 외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GKS 장학생의 참여 기회 보장</p> <p>- 국가 상황, 질병, 가족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출국 최대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교육원장이 판단하여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9. 제9조에 명시된 휴학 기간을 초과한 경우</p> <p>10.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p> <p>11.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p> <p>12.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설)</p>	<p>9. 제5조에 명시된 휴학 기간을 초과한 경우</p> <p>10.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p> <p>11.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p> <p>12.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설)</p>	<p>14. 제9조에 명시된 휴학 기간을 초과한 경우</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9. 제18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p> <p>10.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기소유에 처분을 받거나, 그 외 범죄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p> <p>11. 사망, 정신적·신체적 무능력, 연락두절, 체류기간 종료, 출국 명령 등으로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p> <p>12. 장학을 중도 포기한 경우</p> <p>13. 이 외에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p>	<p>* 제20조(자격상실) 제6호 조문 위치 변경</p> <p>- '성범죄는 기소유에 처분, 그 외에 범죄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추가하여 출입국관리법 상 출국명령 기준 반영 및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p> <p>* 제20조(자격상실) 제4호 조문 위치 변경</p> <p>* 제20조(자격상실) 제13호 조문 위치 변경</p> <p>-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장학생에 대한 자격상실 처분 근거 조항 신설</p> <p>- 문구 수정</p>
<p>제18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장학금 일시정지, 자격상실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정치활동을 하거나, 장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추시킨 경우</p> <p>2. 절도, 폭력,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포함), 폭언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p> <p>3. 학사지침 또는 법령을</p>	<p>제18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장학금 일시정지, 자격상실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정치활동을 하거나, 장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추시킨 경우</p> <p>2. 절도, 폭력,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포함), 폭언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p> <p>3. 학사지침 또는 법령을</p>	<p>(신설)</p>	<p>제20조(징계) ①징계는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장학금 일시정지, 자격상실 처분을 말한다.</p> <p>②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p> <p>1. 정치활동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익을 실추시킨 경우</p> <p>2. 절도, 폭력,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포함), 폭언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p> <p>3. 법령을 위반한 경우</p>	<p>- 기존 '경고, 장학금 일시정지, 자격상실'의 징계 종류에서 '경고' 제외</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위반한 경우</p> <p>4. 각종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p> <p>5.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6.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p> <p>(신설)</p>	<p>위반한 경우</p> <p>4. 각종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p> <p>5.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6.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p> <p>(신설)</p>	<p>(신설)</p>	<p>4. 각종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p> <p>5.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6. 이 외에 장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p> <p>③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조치할 수 있다.</p> <p>1. 징계 처분을 하기에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2. 불가피한 사유 등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p>	<p>- 경고 조치 사유 명시</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1조(형사사건 기소 사실 신고 등) ①장학생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된 경우, 수사 개시 사실 또는 형사사건 기소 사실을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형사사건 기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교육원장은 장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p> <p>④교육원장은 장학생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장학생에게 제19조제10호에 따라 자격상실 처분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교육원장은 장학생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 환수 대상 기간, 항목, 금액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 장학생에게 형사사건 기소 사실 신고 의무를, 수학기관에는 장학생 형사사건 기소 사실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장학생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p> <p>- 범죄 행위를 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p>
<p>제19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장학금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9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장학금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8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장학금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2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장학금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침에 따른다.</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②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p> <p>③장학생이 제2조의 한국 어연수 기간 중에 일시출국하면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p> <p>④장학생이 제3조의 학위과정 중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일시출국하면 30일 초과분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p> <p>⑤제8조의 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p> <p>⑥제17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과 귀국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장학기간 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 장학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p> <p>⑧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p>	<p>②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p> <p>③장학생이 제2조의 한국 어연수 기간 중에 일시출국하면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p> <p>④장학생이 제3조의 학위과정 중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일시출국하면 30일 초과분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p> <p>⑤제8조의 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p> <p>⑥제17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과 귀국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장학기간 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 장학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p> <p>⑧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p>	<p>②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p> <p>③장학생이 제2조의 예비 교육과정 기간 중에 일시출국하면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p> <p>④장학생이 제3조의 석·박사 학위과정 중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일시출국하면 30일 초과분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p> <p>⑤제9조의 휴학 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p> <p>⑥제17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중도 포기 등의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과 귀국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p> <p>⑧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긴급소환 등 교육</p>	<p>②교육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삭제&gt;</p> <p>③장학생의 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여 학업장려금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국내 체류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위과정 장학생은 장학금 지침 제22조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기당 일시출국 일수 30일을 국내에 체류한 날로 간주한다.</p> <p>④제12조의 휴학 기간에는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학업장려금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p> <p>⑤제19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장학 기간 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 장학 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p> <p>⑦학위과정 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한국어연</p>	<p>- 일시출국에 따른 학업장려금 지급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p> <p>- 장학금 지침 변경(예정)에 따라 생활비를 학업장려금으로 명시</p> <p>- 장학금 지침 반영</p> <p>- 장학금 반환 해당 사유 상세화</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u>수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과정 입학 후 3개월 이내로 한다.</u>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u>경미한 사항</u> 은 장학생의 소속 수학기관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u>경미한 사항</u> 은 장학생의 소속 수학기관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u>경미한 사항</u> 은 장학생의 소속 수학기관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u>학사</u> 에 관한 <u>사항</u> 은 장학생의 소속 수학기관의 학칙을 준용한다.	- 문구 수정
<p>제21조(장학생 관리·점검) 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 있는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u>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u></p> <p>1.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p> <p>2.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 및 수학대학이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할 수 있다.</p> <p>3. 수학대학장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과 인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p>	<p>제21조(장학생 관리·점검) 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 있는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u>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u></p> <p>1.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p> <p>2.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 및 수학대학이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할 수 있다.</p> <p>3. 수학대학장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과 인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p>	<p>제20조(현지지도) 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 현지지도 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 있는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u>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해야 한다.</u></p> <p>1.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p> <p>2.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 및 수학대학이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p> <p>(일부 조정)</p>	<p>제24조(장학생 관리·점검) 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 있는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u>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장학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간제취업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u></p> <p>1.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p> <p>2. <u>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u></p> <p>3. 학위과정 장학생의 <u>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 중에도 허용할 수 있다.</u> 가. 수학대학 내 근로 장학생의 경우 나. 수학대학에서 주관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학술 활동의 경우 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실습에</p>	<p>- 시간제취업에 대한 내용 보완</p> <p>- 한국어연수과정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를 호를 분리하여 구분</p> <p>- 학위 과정 시간제 취업의 허용 범위를 호를 분리하여 구분</p> <p>- 수학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에 대해 시간제취업 허용</p>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학사 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생 학사지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변경 사유
<p>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만 허용할 수 있다.</p> <p>(신설)</p>	<p>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만 허용할 수 있다.</p> <p>(신설)</p>	<p>3. 제2호 외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만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경고)에 해당하는 장학생과 예비교육과정 장학생은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p> <p>(신설)</p>	<p><u>참여하는 경우</u> <u>다. 장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연계한 인턴 활동의 경우</u></p> <p><u>③학위과정 장학생은 수 학대학이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하여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취업일 이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생의 취업 기회 보장</li> <li>- 취업 후 장학금 지급 중단 명시</li> </ul>
<p>제22조(장학생 관리실적 평가) 교육원장은 수학기관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위탁인원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제22조(장학생 관리실적 평가) 교육원장은 수학기관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위탁인원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제21조(장학생 관리실적 평가) 교육원장은 수학기관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위탁인원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제25조(장학생 관리실적 평가) 교육원장은 수학기관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인원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 정비 (위탁인원 → 인원)</li> </ul>